

[로스쿨 소식]

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

1. 시험일정

가. 시험일시

2018. 1. 9.(화) ~ 2018. 1. 13.(토)

※ 2018. 1. 11.(목)은 휴식일

나. 응시자 준비사항 등

구체적 일시,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은 2017. 11. 22.(수) 관보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(www.moj.go.kr/lawyer)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2. 시험방법

가. 공법·민사법·형사법 : 선택형 필기시험 및 논술형 필기시험

나.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: 논술형 필기시험

3.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

가. 시험과목

- 공 법(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)
- 민사법(「민법」, 「상법」 및 「민사소송법」 분야의 과목)
- 형사법(「형법」 및 「형사소송법」 분야의 과목)
-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

나.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와 그 출제범위

과 목	출 제 범 위
국 제 법	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.
국제거래법	「국제사법」과 「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」으로 한다.
노 동 법	사회보장법 중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포함한다.
조 세 법	「국세기본법」, 「소득세법」, 「법인세법」 및 「부가가치세법」으로 한다.
지적재산권법	「특허법」, 「실용신안법」, 「디자인보호법」, 「상표법」 및 「저작권법」으로 한다.
경 제 법	「소비자기본법」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로 한다.
환 경 법	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영향평가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,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토양환경보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및 「환경분쟁조정법」으로 한다.

4. 응시자격 및 응시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

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,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

나. 응시 결격사유

공고된 시험기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-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⑤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⑥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⑦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⑧ 「변호사법」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

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

2017. 10. 27.(금) 09:00 ~ 11. 2.(목) 24:00 매일 24시간 접수(접수 첫날 제외)

- ※ 접수된 응시원서는 당해 시험에서만 유효하고, 공고한 접수기간 외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.

나. 접수방법

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(<http://moj.uwayapply.com>)에 직접 접속하거나 변호사시험 홈페이지(www.moj.go.kr/lawyer)를 통하여 위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안내 절차에 따라 접수하면 됩니다.

- ※ 위 방법 외 응시원서 접수는 불가합니다.

다. 응시 수수료

200,000원(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)

- ※ 응시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신용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은 별도입니다.

6.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

가. 발표일시: 2018. 4. 27.(금)경

나. 표방법: 법무부 홈페이지(www.moj.go.kr) 및 변호사시험 홈페이지(www.moj.go.kr/lawyer)에 게시

7.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

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「변호사시험법」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※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「병역법」또는「군인사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8.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

가. 제출기한

2017. 10. 27.(금) 09:00 ~ 11. 2.(목) 24:00(원서접수기간 내 제출)

나. 소명방법

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합니다.(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)

다. 제출방법

-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직접 제출(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)
- ※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(2017. 11. 2. 우체국 소인 분 까지 유효함)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,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(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항)
- ※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. 변호사시험 홈페이지(www.moj.go.kr/lawyer) →「변호사시험」 →「석사학위 취득(예정)자 확인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